

# 조선시대 국상 시 오복제도에 관한 연구 (제1보) -여자 복식을 중심으로-

이 영 주<sup>†</sup>

동덕여자대학교 패션학과

## A Study on the National Mourning Dresses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Women's Dresses-

Young Joo Lee<sup>†</sup>

Dept. of Fash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8년 6월 5일), 수정일(2008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2008년 9월 17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son why the National Mourning Dress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had been established although the General Mourning Dress System had exist through research of three things; differences of each social class, changes of the National Mourning Dress System by the age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al one and the General one. The methodology which is adopted for this study is comparative analysis by social class, period and age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Orye-e. And this study is focus on the women's d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some mourning dress items had been different or not used by class. Secondly, although there had not been a great change, some dress items had been disappeared or used irregularly. And Naemyoungbu Naekwan's mourning dress had been changed by the age. Thirdly, The National one was more extensive in wearing and applied differently by class compare to the General one. Also it had an additional rule according to the period, duty and place to Naemyoungbu-Naekwan and Naemyoungbu-Goongkwan. The National one had been established by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who had tried to keep the Confucian standard and perfect social status system. And it is supposed that the National Mourning Dress System had not been a great change because the ruling class' will had not been changed.

**Key Word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rye-e, National mourning, Mourning dresses system; 조선 왕조실록, 오례의, 국상, 오복제도

### I. 서 론

喪服이란 亡者가 입는 襲服과 服者가 입는 五服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五服의 경우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亡者와 服者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國喪 때에는 政界의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얽혀 服을 결정하는 일이 정권다툼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사학계의 많은 관심을 끌어 왔으며 복식사 분야에서도 몇몇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상 시 오복제도를 계급별로 비교·분석하거나, 시대에 따른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상 시 오복제도의 계급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dudwnrj@hotmail.com

별 차이점과 시대 따른 변화 그리고 일반 오복제도와 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국상 시 오복제도가 제정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문헌들로부터 조선시대 국상 시 오복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수집하여 계급별, 기간별 그리고 시대별로 분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조선시대 태조부터 순종까지이며, 내용의 비교가 불가능한 남녀의 복식 중 먼저 여자의 것으로만 한정하였고 대왕대비에서 서인 여자에 이르기까지 국상 시 복제가 규정된 모든 계급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 II. 국상 시 오복제도의 계급별 구분

국상 시 오복제도에 앞서 일반 오복제도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禮記』大傳篇에 ‘상복을 입는 차등에는 親親, 尊尊, 名分, 出入, 長幼, 從服 여섯 가지 원칙이 있다’ 하였고, 『주자가례(朱子家禮)』喪禮篇 成服條에 의하면 그 輕重에 따라 재질과 바느질 방법 그리고 착용 기한의 장단을 달리 하여 斬衰, 齋衰, 大功, 小功, 總麻 다섯 가지로 나눈다 하였다. 또한 상례 기간 중에 특정 의식을 기준으로 變服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등급의 구분과 기간별 변화는 망자에 대한 애절한 심정과 그 심정의 변화를 의복으로써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초기 禮制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朱子家禮』의 喪禮篇 成服條에 의하면 부인 상복을 大袖, 長裙, 蓋頭, 頭帶, 竹釵, 麻屨에 남자 복제에 포함된 杖이 없다 하였고, 妾은 부인과 구분하여 背子を 입는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儒家의 예법에는 남녀뿐만 아니라 妻妾의 구분까지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오복제도의 원칙과 규정이 국상 시 오복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며 국상 복제만의 특별한 원칙과 규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朝鮮王朝實錄』과 『世宗 五禮儀』, 『國朝五禮儀』 凶禮篇 服制條 그리고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에 기록된 국상 시 오복제도를 계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계급의 분류는 王室 有服親女, 外命婦 一品 以下, 內命婦 內官, 內命婦 宮官, 兩班婦女 그리고 庶人 女子까지 총 6계급이며 變服하는 의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처음 복을 입는 의식은 ‘成服儀’, 1차 變服 시기는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卒哭祭’ 또는 ‘公除’ 또는 ‘練祭’ 중 하나이며,

2차 變服 시기는 ‘祥祭’이다. 3차 變服 시기는 ‘禫祭’이고 禫祭가 끝나면 吉服으로 돌아입는다.

표의 좌우방향은 복제를 구성하는 품목이고 상하방향은 기록의 연대순이다. 『世宗五禮儀』는 세종 마지막 년으로, 『國朝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는 완성 년도를 기준으로 삼입하였으며, 實錄의 기록은 王/年/月/日로 표기하였다.

### 1. 王室 有服親女

『經國大典』禮典 五服條 의하면 有服親의 한계를 直系尊屬은 高祖父母까지, 直系卑屬은 玄孫까지, 同列親은 三從兄弟姊妹까지라 하였다. ‘王室 有服親女’란 大王 大妃, 王大妃(大妃), 王妃, 王世子嬪, 親子 妻, 親女, 親孫 妻, 親孫女, 同姓異姓總麻以上親女까지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연구자가 편의상 제작한 용어이다. 이 계급의 경우 『世宗五禮儀』와 『國朝五禮儀』 사이 연대에 다른 기록이 없고 두 기록의 내용이 같아 함께 정리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성복 시 복제는 大袖長裙, 蓋頭, 頭帶, 竹釵, 帶 그리고 신발이며 일부 기록에 扇子, 手衣, 褰腮가 있다. 시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大袖長裙’의 경우 太宗부터 純宗까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세종 28년에 동궁의 친딸인 平昌郡主와 왕의 친딸인 貞懿·貞顯公主의 복제가 ‘背子’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朱子家禮』喪禮篇 成服條에 의하면 ‘妾’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이들의 지위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親女 및 親孫女의 복제가 모두 ‘大袖’인 것으로 보면, 적어도 『世宗五禮儀』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들의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實錄』과 『五禮儀』의 凶禮篇 服制條에 ‘大袖本國長衫’ ‘蓋頭代用本國女笠帽’라고 하여 大袖와 長衫은 같은 의복이었으며, 蓋頭 대신 女笠帽을 代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頭帶는 실록에 그 소재가 모두 生布라 하였으므로 단순한 기록상의 차이일 뿐 시대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竹釵 역시 그 변화는 찾아볼 수 없으나 衰服에만 포함되어있을 뿐 大功 이하 總麻까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질과 바느질법에 의해 오복을 구분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帶의 경우도 복의 경중에 따라 ‘粗細生熟’의 차이가 있을 뿐 麻帶를 포함해서 모든 기록에 ‘布’를 사용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頭帶와 같이 표기상의 차이일 뿐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영조 6년 7월 4일 기록에 ‘布袍’라 하였는데 기록의 위치와 전후 내용을 다른 기록

<표 1-1>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王室 有服親女の 成服 時 服制

年代	五服	着用 階級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帶	鞋·靴	扇子	手衣
太宗08/05/25		正妃, 大妃	大袖長裙	蓋頭	布頭帟	竹釵	帶	麻履	扇子	手衣
世宗26/11/27	斬衰	王妃	大袖長裙	蓋頭	布頭帟	竹釵	帶	素履		手衣
世宗28/03/27	齋衰	平昌郡主, 貞懿·貞顯公主	背子長裙	蓋頭	布頭帟	竹釵	帶	素履		手衣
世宗五禮儀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親女 親孫妻, 親孫女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布履 <sup>1)</sup>		
肅宗44/02/10	大功	中宮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布帶	白皮鞋		
肅宗46/06/08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景宗00/06/13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親孫女, 親女,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00/08/30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齋衰	王大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04/11/18	斬衰	王世子嬪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齋衰	中宮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大功	王大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總麻	王大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06/07/04	齋衰三年	中宮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袍	布履		
	齋衰	王大妃, 嬪宮	大袖長裙					布履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齋衰	王大妃, 王大妃, 王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素履 <sup>2)</sup>		
	大功	王大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總麻	王大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27/11/17	大功	中宮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布帶	白皮鞋		
	小功	王大妃, 嬪宮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28/03/07	齋衰	王世子嬪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大功	中宮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布帶	白皮鞋		
	總麻	王大妃	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33/03/20	齋衰	王世子嬪, 親女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麻帶	布履		
		王大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33/04/01	齋衰	王世子嬪, 親孫女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純附12/01/27	斬衰	王妃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麻帶	布履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純附는 純宗實錄附錄이다.

<sup>1)</sup> 世宗 五禮儀는 布履, 國朝五禮儀는 布履

<sup>2)</sup> 王大妃와 王大妃는 布履, 王妃는 素履

들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당시 喪이 7월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布帶'의 誤記로 판단된다. 신발도 '履',

'履', '鞋' 등 다양하게 기록되었으나, 모두 신목이 짧은 신이며, 그 소재를 살펴본 결과 최복에는 '白綿布'

를, 大功 이하에는 ‘白皮’를 사용하라 하였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변화는 없으나 이것 역시 오복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 1-2>에 의하면 1차 변복 제도는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그리고 신발이며 성복 시 복제와 비교했을 때 竹釵가 없다. 변화를 살펴보면 大袖長裙의 경우,

<표 1-2>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王室 有服親女の 卒哭·公除·練祭 後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基準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鞋·靴
世宗28/03/27	齋衰	平昌郡主, 貞懿·貞顯公主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世宗五禮儀凶禮篇服制條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親女, 親孫妻, 親孫女,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端宗00/05/17	斬衰	親女公主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端宗00/08/08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睿宗00/09/09	斬衰	太妃, 王妃, 親女公主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國朝五禮儀凶禮篇服制條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親女, 親孫妻, 親孫女,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成宗14/04/01	齋衰三年	大妃, 中宮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仁祖10/07/01	齋衰三年	中殿	卒哭	白布衣				
仁祖23/05/11		中殿	公除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布帶	白皮鞋
肅宗46/06/08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同姓異姓麻以上親女	練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景宗00/06/13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親孫女, 親女, 同姓異姓麻以上親女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靴
英祖00/08/30	斬衰	王妃, 王世子嬪, 同姓異姓麻以上親女	練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白皮鞋
	齋衰	王大妃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01/08/24		中宮, 王大妃, 同姓異姓麻以上親女	練祭	衰服及裳	練布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04/11/18	斬衰	王世子嬪	練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齋衰	中宮	公除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大功	王大妃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總麻	大王大妃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英祖06/07/04	齋衰三年	中宮	練祭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齋衰	大王大妃, 嬪宮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國朝續五禮儀凶禮篇國恤服制條	斬衰	王妃 <sup>1)</sup> , 王世子嬪, 親子妻同姓異姓麻以上親女	練祭	改制衰服及裳	練布蓋頭	頭帟	帶	白皮鞋
	齋衰	王大妃, 王妃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大王大妃, 王世子嬪	卒哭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大功	王大妃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總麻	大王大妃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英祖27/11/17	大功	中宮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小功	大王大妃, 嬪宮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英祖28/03/07	齋衰	王世子嬪	公除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大功	中宮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總麻	大王大妃	公除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英祖33/02/20	齋衰	王世子嬪, 親女	練祭	改制大袖長裙	練布蓋頭	頭帟	帶	白皮鞋
	齋衰	大王大妃	公除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白布帶	
純附12/01/27	斬衰	王妃	練祭	改制大袖長裙	練布蓋頭	頭帟	帶	白皮鞋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純附는 純宗實錄附錄이다.

<sup>1)</sup> 왕비의 齋衰三年 服制 구성은 斬衰와 같다.

英祖 원년에 ‘白布’는 ‘練布’라 하였고, 『朱子家禮』 喪禮篇 小喪條에 ‘練’이란 ‘오랫동안 삶아 익힌 실’이라 하였기 때문에 ‘白衣-’ 모두 ‘練布’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深染玉色大袖長裙’은大功 이하 總麻까지의 복제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輕服은 重服보다 빨리 ‘有色服’으로 변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衰服及裳’ ‘改制衰服及裳’ 그리고 ‘改制大袖長裙’의 경우 『純宗實錄附錄』에서만 ‘略麤生布’를, 나머지는 모두 ‘不練七升布’를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朱子家禮』와도 맞지 않고, 영조 1년 이후의 기록들에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원인과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蓋頭의 경우 ‘黑蓋頭’와 ‘蓋頭’는 특별한 규칙이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으나, ‘練布蓋頭’는 ‘改制大袖長裙’과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大袖長裙을 不練七升布로 할 때 蓋頭는 練布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에 3년 喪에 ‘練布蓋頭’ 期年 喪에 ‘蓋頭’ 그리고大功 이하에 ‘黑蓋頭’라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소재와 색상으로 蓋頭의 輕重을 구분하여 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頭髻의 경우 實錄의 기록방식을 살펴보면 ‘黑蓋頭頭髻’라 기록되어 ‘黑蓋頭’와 ‘頭髻’인지, ‘黑蓋頭’와 ‘黑頭髻’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頭髻’ 앞에 확실한 수식어가 없는 경우는 단지 ‘頭髻’로만 정리하였다. 따라서 頭髻의 경우 시대에 따른 변화는 없고 다만 『五禮儀』 凶禮篇 服制條에서 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하게 시행되다가 인조 23년 이후 온전히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帶의 경우 성종 14년까지는 ‘黑帶’와 ‘帶’가 혼용되다가 숙종 46년 이후부터 오직 ‘帶’라고만 기록되었는데 매우 불규칙하게 사용된 것을 고려해 볼 때 蓋頭나 頭髻와 같이 흑색의 사용이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영조 33년의 ‘白布帶’ 역시 매우 예외적인 기록으로 그 원인과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신발의 경우 성복 시에는 白綿布로 제작되었으나 1차 변복에서는 가죽으로 제작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성복 시 복제가 1차 변복 복제보다 더욱 거칠고 불편한 복제임을 고려할 때, 면포신과 가죽신과의 관계도 그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皮鞋의 소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최복에는 白皮鞋 또는 白皮靴이고大功 이하에는 皮鞋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오복을 구분 짓는 또 하나의 요소로 판단된다.

『朱子家禮』 喪禮篇 小喪條에 의하면 ‘小祥 즉 練祭에 練服을 진설한다.’라고 하였으나, 공제와 졸곡에는 변복하는 제도에 관한 기록이 없어 實錄과 차이를 보인다.

<표 1-3>에 의하면 2차 변복 제도는 大袖, 長裙, 蓋頭, 頭髻, 帶 그리고 신발로, 1차 변복 제도와 구성요소는 같다. 변화를 살펴보면 세 종류의 『五禮儀』를 포함한 모든 기록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신발만 ‘皮鞋’와 ‘白皮鞋’ 그리고 ‘黑皮鞋’로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전술한 복제들과 비교했을 때 大袖長裙이 深

<표 1-3>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王室 有服親女の 祥祭 後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大袖長裙	蓋頭	頭髻	帶	鞋·靴
世宗五禮儀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王妃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皮鞋
仁祖10/07/01	齊衰	中殿	深染玉色衣				
肅宗46/06/08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同姓異姓麻以上親女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皮鞋
景宗00/06/13	斬衰	王妃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白皮靴
英祖00/08/30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同姓異姓麻以上親女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白皮鞋
英祖04/05/13	斬衰	王世子嬪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皮鞋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斬衰	王妃, 王世子嬪, 親子妻 同姓異姓麻以上親女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白皮鞋
英祖33/02/20	齊衰	王世子嬪, 親女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白皮鞋
純附12/01/27	斬衰	王妃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髻	帶	黑皮鞋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純附는 純宗實錄附錄이다.

染玉色으로 달라졌으며 蓋頭가 黑色이라는 것이 祥祭 후 복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차 변복 시기는 禪祭이다. 그러나 禪祭 복제에 관한 기록은 영조 33년 2월 20일의 기사가 유일했는데, 禪祭時 왕세자빈과 친녀의 복제를 黑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그리고 白皮鞋라 하였고, 이것으로 大袖長裙과 蓋頭는 모두 黑色이고, 신발은 白色인 禪祭時 복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2. 內命婦 內官

세종 10년 3월에 내명부 제도를 체계화 하여 크게 內官과 宮官으로 나누고 각각의 品階와 職務까지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내명부의 품계 및 명칭뿐만 아니라 內官과 宮官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世宗實錄의 구분에 따라 後宮을 內官으로, 謁內的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 尙宮 이하를 宮官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또한 태종 8년과 세종 28년 당시의 誠妃·宮主(太宗實錄 6년 5월 2일) 그리고 翁主(太宗實錄 8년 2월 17일)는 後宮

으로 조사되어 內命婦 內官에 포함시켜 정리하였다.

<표 2-1>에 의하면 성복 시 복제는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帶 그리고 신발이며 有服親女와 같이 일부 기록에서 扇子, 手衣, 裹腮가 보인다.

변화를 살펴보면 大袖長裙의 경우 세종 28년까지는 內官 중에서도 妃·嬪 같은 상위계급은 大袖長裙을, 그 이하는 背子를 착용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太上王 후궁인 壽康宮 內官은 大袖長裙을, 上王 후궁인 德壽宮 內官은 背子長裙을 착용함으로써 같은 宮中·翁主라 하더라도 太上王과 上王의 후궁을 구분하려 했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世宗五禮儀』 이후로는 내명부 嬪 이하 또는 良嬪 이하 복제는 모두 大袖로 통일되어 내명부 내관계급 내에서의 세부적인 구분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頭帟와 帶는 有服親女の 복제에서 전술한 바와 같으며, 영조 6년의 ‘布袍’ 역시 ‘內命婦與中宮殿服同’이라는 기록에 의한 것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誤記로 판단된다. 신발의 경우 麻履, 素履, 布履, 布履 등으로 다양하지만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白綿布로 제작된 비슷한 형태의 신발로 추측된다. 한편 태종 8년의 宮主·翁主와 세종

<표 2-1>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內命婦 內官의 成服 時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帶	鞋·靴	扇子	手衣	裹腮
太宗08/05/25		誠妃, 淑嬪	大袖長裙	蓋頭	布頭帟	竹釵	帶	麻履	扇子	手衣	裹腮
		宮主, 翁主	背子	蓋頭	布頭帟	竹釵	帶	白皮溫鞋	扇子	手衣	裹腮
		齊衰	承徽, 貴人, 東室, 別室, 淑容, 尙食, 典贊	背子長裙	蓋頭	布頭帟	竹釵	帶	素履		手衣
世宗28/03/27	齊衰	嬪, 宮主, 翁主 <sup>1)</sup>	背子長裙	蓋頭	布頭帟	竹釵	帶	白皮鞋		手衣	裹腮
	小功	宮主, 翁主 <sup>2)</sup>	大袖長裙	蓋頭	布頭帟	竹釵	帶	白皮鞋		手衣	裹腮
	世宗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內命婦 嬪 以下 良嬪 以下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內命婦 嬪 以下 良嬪 以下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肅宗46/06/08	斬衰	內命婦 嬪 以下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景宗00/06/13	斬衰	內命婦 嬪 以下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00/08/30	斬衰	內命婦 嬪 以下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06/07/04	齊衰三年	內命婦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袍	布履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斬衰 齊衰三年	內命婦 嬪 以下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33/02/20	齊衰	內命婦 嬪 以下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33/04/01	齊衰三年	內命婦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麻帶	布履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sup>1)</sup> 壽康宮의 嬪, 宮主, 翁主  
<sup>2)</sup> 德壽宮의 宮主와 翁主

28년 德壽宮의 후궁들만 白皮로 만들어진 신을 신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有服親女の 복제와 비교해 볼 때 白皮로 제작된 신은 1차 변복 제도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복 시부터 보다 편한 신발을 신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종 8년의 宮主·翁主는 上王인 正宗의 후궁으로 추측되며 비록 후궁이라 ‘背子’를 착용하지만 이들이 上王殿의 후궁임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扇子, 手衣 그리고 喪腮의 경우도 왕실 有服親女の 복제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일부 기록에서 背子が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왕실 有服親女の 복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 28년에는 ‘上項貴人 以下, 時御闕內及進見時, 着白衣裳黑帶. 三十日後, 闕內淺淡服, 進見時着吉服, 出外着衰服. 卒哭後, 闕內吉服, 出外白衣裳終期年’라고 하여 기간과 수행하는 임무 그리고 장소에 따른 추가 복제가 있고, 『世宗五禮儀』와 『國朝五禮儀』 凶禮篇 服制條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계급과 직무의 특성이 복식에 반영된 것으로 일반 오복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차이점이다. 또한 추가된 복제에 의해 복을 착용하는 것은 내명부 내관들이지만 그러한 복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시는 상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세 종류의 『五禮儀』와 『實錄』에 ‘內命婦 嬪 以下 服與王妃服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 2-2>와 <표 2-3>에 나타난 복제에 대한 분석 또한 왕비복과 같다.

### 3. 外命婦 一品 以下

外命婦 一品 以下에는 一品 以下 命婦, 宗親及文武百官 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銜官 妻와 同姓異姓 總麻以上親 妻가 포함된다.

<표 3-1>에 의하면 이들의 복제는 왕실 有服親女 또는 내명부 內官의 복제와 비교했을 때 구성요소는 같으나 복의 단계가 한 단계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內命婦 內官의 卒哭·公除·練祭 後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기준	大袖長裙	蓋頭	頭帻	帶	鞋·靴
世宗28/03/27	齋衰	承徽, 貴人, 東室, 別室, 淑容, 尙食, 典贊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世宗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內命婦 嬪 以下, 良娣 以下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帻	帶	白皮鞋
端宗00/05/17	斬衰	內命婦 貴人, 昭容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內命婦 嬪 以下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帻	帶	白皮鞋
睿宗00/09/09	斬衰	嬪, 貴人, 昭儀, 淑儀, 昭容, 淑容, 昭訓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成宗05/04/16	齋衰	淑儀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內命婦 嬪 以下, 良娣 以下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帻	帶	白皮鞋
成宗14/04/01	齋衰三年	內命婦 以下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仁祖23/05/11		淑儀, 貴人 以下	公除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帻	布帶	白皮鞋
肅宗46/06/08	斬衰	內命婦 嬪 以下	練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帻	帶	白皮鞋
景宗00/06/13	斬衰	內命婦 嬪 以下	練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帻	帶	白皮靴
英祖00/08/30	斬衰	內命婦 嬪 以下	練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帻		白皮鞋
英祖01/08/24		內命婦	練祭	不練衰服及裳	練布蓋頭	頭帻	帶	白皮鞋
英祖06/07/04	斬衰	內命婦	練祭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帻	帶	白皮鞋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斬衰 齋衰三年	內命婦 嬪 以下	練祭	改制衰服及裳	練布蓋頭	頭帻	帶	白皮鞋
英祖33/02/20	齋衰	內命婦 嬪 以下	公除	白布大袖長裙	黑蓋頭	頭帻	白布帶	
英祖33/04/01	齋衰三年	內命婦	練祭	改制大袖長裙	練布蓋頭	頭帻	帶	白皮鞋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표 2-3>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內命婦 內官의 祥祭 後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鞋·靴
世宗五禮儀 凶禮篇 服制條	斬衰	內命婦 嬪 以下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國朝五禮儀 凶禮篇 服制條	斬衰	內命婦 嬪 以下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肅宗46/06/08	斬衰	內命婦 嬪 以下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皮鞋
景宗00/06/13	斬衰	內命婦 嬪 以下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靴
英祖00/08/30	斬衰	內命婦 嬪 以下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斬衰	內命婦 嬪 以下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33/04/01	齋衰三年	內命婦	深染玉色大袖長裙	黑蓋頭	頭帟	帶	白皮鞋

<표 3-1>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外命婦 一品 以下の 成服 時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帶	鞋·靴	除服
世宗五禮儀 凶禮篇服制條	齋衰	宗親一品 以下, 文武堂上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文武三品 以下 妻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卒哭
端宗00/05/17		一品 以下 命婦	白布大袖	蓋頭			布帶		
睿宗00/09/09		一品 以下 命婦	白布大袖	蓋頭			帶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齋衰	宗親一品 以下, 文武堂上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文武三品 以下 妻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卒哭
成宗14/04/01		一品 以下 命婦	白布大袖	蓋頭			布帶		
肅宗46/06/08	齋衰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景宗00/06/13	齋衰	宗親一品 以下, 文武堂上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文武三品 以下 妻	白綿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靴	卒哭
英祖00/08/30	齋衰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英祖06/07/04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白皮鞋	卒哭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齋衰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大袖長裙	蓋頭	頭帟	竹釵	布帶	布履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 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卒哭
英祖33/02/20		宗親及文武百官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卒哭
英祖33/04/01		宗親及文武百官妻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卒哭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또한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文武三品 以下 妻의 복제를 따로 구분한 경우는 두 단계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다. 즉 왕실 有服親女와 내명부 내관이

斬衰를 입으면 외명부 1품 이하는 齋衰를 입고 文武三品 以下 妻는 왕실 有服親女와 내명부 내관들의 1차 변복 때 복제와 같으며 제복 시기도 ‘卒哭’으로 빠르다



는 것이다. 그러나 『世宗五禮儀』·『國朝五禮儀』凶禮篇 服制條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文武三品 以下 妻의 복제를 따로 규정한 기록으로 경종 원년이 유일할 만큼 실제로는 구분되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뿐만 아니라 『國朝續五禮儀』凶禮篇 國恤服制條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성복 시 복제의 구성요소는 왕이 사망한 경우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그리고 履履이고 王妃(영조 33년), 大妃(성종 14년), 王大妃(영조 6년) 또는 大王大妃(영조 33년)가 사망한 경우는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그리고 白皮鞋이며 졸곡 후 除服한다. 文武三品 以下 妻는 왕 사망한 경우라도 후자와 같다.

<표 3-2>에 의하면 1차 변복의 구성요소는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그리고 신발이며 성복 시 복제와 비교했을 때 역시 竹釵가 없다. 구성요소는 전술한 왕실 有服親女 또는 내명부 내관과 같고 文武三品 以下 妻의 경우 졸곡 후에 除服하기 때문에 1차 변복 제도조차 없다.

4. 內命婦 宮官

內命婦 宮官은 전술한 바와 같이 궐내에 다양한 실

무를 담당한 大殿의 尙宮 이하와 世子宮의 守闈 이하가 포함된다. 성종 5년에 ‘淑儀陪加氏’는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록의 위치와 복제로 보아 상궁 이하의 계급으로 판단되어 내명부 宮官 계급에 포함시켰다.

<표 4-1>에 의하면 성복 시 복제는 背子, 蓋頭, 頭帟, 帶 그리고 신발이다. 상의의 경우 『朱子家禮』喪禮篇 成服條에서 妻의 복제로 규정한 背子를 착용하였으며 태종부터 영조까지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숙종 44년에 세자궁 상궁 이하의 복이 白衣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背子보다 한 단계 輕服일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사망자는 왕세자빈이어서 왕과 왕비는 大功에 9일 除服하였고(대전과 중궁전 상궁 이하에 대한 복제는 기록이 없다), 왕세자도 齋衰期年이라 하였으나 30일 만에 除服하고, 세자궁의 상궁 이하는 ‘世子服盡後吉服’이라 하여 세자가 吉服을 입으면 상궁 이하도 따라서 除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嬪宮의 상궁 이하는 직접 모시는 상전이 사망하여 齋衰期年임에도 불구하고 斬衰에 쓰는 ‘極麤生布’를 사용하라 하였으니, 복의 輕重을 고려하였을 때 背子보다 한 단계 가벼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궁 이하의 복제는 사망자와 본인의 관

<표 3-2>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外命婦 一品 以下の 卒哭·公除·練祭 後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基準	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鞋·靴
世宗五禮儀 凶禮篇服制條	齋衰	宗親一品 以下, 文武堂上官妻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端宗00/05/17		一品 以下 命婦	卒哭		黑蓋頭		黑帶	
端宗00/08/08		宗親一品 以下 文武堂上官妻 前衛堂上官妻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睿宗00/09/09		一品 以下 命婦	卒哭		黑蓋頭巾		黑帶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齋衰	宗親一品 以下, 文武堂上官妻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成宗14/04/01		一品 以下 命婦	卒哭		黑蓋頭		黑帶	
肅宗46/06/08	齋衰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景宗00/06/13	齋衰	宗親一品 以下 文武堂上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卒哭	白綿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靴
英祖00/08/30	齋衰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英祖01/08/24	齋衰	外命婦	練祭	不練衰服及裳	練布蓋頭	頭帟	帶	白皮鞋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齋衰	宗親及文武百官妻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衛官妻 同姓異姓麻以上親妻	卒哭	白布大袖長裙	蓋頭	頭帟	帶	白皮鞋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lt;표 4-1&gt;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內命婦 宮官의 成服 時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背子	蓋頭	頭帟	帶	鞋·靴	비고
太宗08/05/25		各殿侍女	背子	蓋頭		生麻帶	白皮鞋	
		水賜	背子			生麻帶	白皮鞋	
世宗28/03/27		侍女	背子	蓋頭		帶	白皮鞋	
世宗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六尙 以下, 司閨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素鞋	侍婢 以下 無蓋頭
端宗00/05/17	斬衰	六尙 以下	背子	蓋頭		布帶	素鞋	
睿宗00/09/09	斬衰	侍女 以下	布背子	蓋頭		布帶	素鞋	
成宗05/04/16	齋衰	中宮侍女, 淑儀陪加氏	背子	蓋頭		帶	白皮鞋	
		水賜 以下	背子			帶	白皮鞋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素鞋	侍婢 以下 無蓋頭
肅宗44/02/10	齋衰	世子宮 尙宮 以下	白衣			布帶		
		嬪宮 尙宮 以下	背子	蓋頭	頭帟			
		侍婢 以下				布帶	白皮鞋	
肅宗46/06/08	斬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素鞋	侍婢 以下 無蓋頭
英祖00/08/30	斬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素鞋	侍婢 以下 無蓋頭
英祖04/11/18	齋衰	尙宮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素鞋	
英祖06/07/04	齋衰三年	尙宮 以下	背子			布帶	素鞋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斬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素鞋	侍婢 以下 無蓋頭
	齋衰三年	尙宮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素履	侍婢 以下 無蓋頭
	齋衰	尙宮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白皮鞋	
英祖27/11/17	齋衰	賢嬪宮 尙宮 以下	背子	蓋頭	頭帟	布帶	白皮鞋	
		侍婢 以下				布帶	白鞋	
英祖33/02/20	齋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背子	蓋頭	頭帟	麻帶	素鞋	侍婢 以下 無蓋頭
英祖33/04/01	齋衰三年	尙宮 以下, 守閨 以下	背子	蓋頭	頭帟	麻帶	素鞋	侍婢 以下 無蓋頭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계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직접 모시는 상전과의 관계  
까지도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일  
반 오복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차이점이며,  
복을 입는 상궁 이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  
시는 상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술한 계급들의 성복 시 복제에 竹釵가 있었  
으나 내명부 宮官은 없으며, 다수의 기록에 의해 내  
명부 宮官 중에서도 侍婢 이하는 蓋頭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竹釵 또는 蓋頭와 같이 頭飾으로  
써 계급의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禮記』冠義  
篇에 ‘凡人之所以爲人者 禮義也 禮義之始 在於正容體  
齊顏色 順辭令 容體正 顏色齊 辭令順 而后禮義備 以正  
君臣 親父子 和長幼 君臣正 父子親 長幼和 而后禮義立  
故 冠而后服備 服備而后 容體正 顏色齊 辭令順 故曰 冠

者 禮之始也 是故 古者 聖王 重冠’과 같이 ‘冠’을 매우 중  
요시 여겼던 유교식 옷차림 예절이 일반 복식뿐만 아니  
라 오복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신발은 素  
鞋 또는 白皮鞋라 기록되었는데 素鞋의 경우 단종 원년,  
예종 원년 그리고 영조 6년에만 소재에 대한 기록이 없  
고, 나머지 모든 기록에서 ‘白皮’를 사용하라 하였기 때  
문에 결국 모두 ‘白皮鞋’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文武三  
品 以下 妻와 같이 다른 계급에서 1차 변복 때 신는 白皮  
鞋를 궁관들은 성복 때부터 신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에 의하면 1차 변복 제도의 구성요소는 背  
子, 蓋頭, 頭帟, 帶, 그리고 신발이다. 변화를 살펴보  
면 상의의 경우 白背子 또는 白布背子라 기록되었는데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일 뿐 같은 것으로 판단되며, 頭  
帟와 帶의 경우 黑蓋頭와 黑帶가 불규칙하게 기록되었

는데 다른 기록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黑色의 정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4-3>과 <표 4-4>에서와 같이 2차·3차 번복 제도의 구성요소는 성복 시 복제와 같다. 다만 2차 번복 제도의 背子는 深染玉色이고, 3차 번복 제도의 背子는 黑色이라는 것이 다르다. 왕실 有服親女와 내명부 내관계급의 기간별 복제가 大袖에서 시작해서 白布大袖, 深染玉色大袖 그리고 黑色大袖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내명부 궁관의 복제 역시 背子로 시작해서 白布背子, 深染玉

色背子 그리고 黑色背子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兩班婦女

<표 5>에 의하면 세종 28년과 성종 5년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兩班婦女의 복제는 白長衫에 黑帽笠을 입고 卒哭 후 除服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大袖는 본국의 長衫이라 하였으니 白長衫이란 白布大袖와 같고, 蓋頭는 본국의 女笠帽로 대응한다 하였으

<표 4-2> 實錄과 五禮儀에 나타난 內命婦 宮官의 卒哭·公除·練祭 後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기준	背子	蓋頭	頭帶	帶	鞋·靴
世宗28/03/27		侍女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世宗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六尙 以下, 司閨 以下	卒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端宗00/05/17	斬衰	六尙 以下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睿宗00/09/09	斬衰	侍女 以下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成宗05/04/16	齋衰	中宮侍女, 淑儀陪加氏	卒哭	白衣裳	黑蓋頭		帶	
		水賜 以下	卒哭	白衣裳			黑帶	
國朝五禮儀 凶禮篇服制條	斬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卒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成宗14/04/01	齋衰三年	侍女 以下	卒哭	白衣裳	黑蓋頭		黑帶	白皮鞋
肅宗46/06/08	斬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練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英祖00/08/30	斬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練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英祖01/08/24	斬衰	尙宮 以下	練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英祖04/11/18	齋衰	尙宮 以下	公除	白布背子	黑蓋頭	頭帶	帶	白皮鞋
英祖06/07/04	齋衰三年	尙宮 以下	練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國朝續五禮儀 凶禮篇 國恤服制條	斬衰 齋衰三年	尙宮 以下, 守閨 以下	練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英祖33/02/20	齋衰	尙宮 以下	公除	白背子			白帶	
英祖33/04/01	齋衰三年	尙宮 以下, 守閨 以下	練祭	白布背子	蓋頭	頭帶	帶	白皮鞋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표 4-3> 實錄에 나타난 內命婦 宮官의 祥祭 後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背子	蓋頭	頭帶	帶	鞋·靴
英祖33/02/20	齋衰	尙宮 以下, 守閨 以下	深染玉色背子			黑帶	
英祖33/04/01	齋衰三年	尙宮 以下, 守閨 以下	深染玉色背子	黑蓋頭	頭帶	帶	白皮鞋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표 4-4> 實錄에 나타난 內命婦 宮官의 祭 時 服制

年代	五服	着用階級	背子	蓋頭	頭帶	帶	鞋·靴
英祖33/04/01	齋衰三年	尙宮 以下, 守閨 以下	黑色背子	黑蓋頭	頭帶	帶	白皮靴

&lt;표 5&gt; 實錄에 나타난 兩班婦女の 成服 時 服制

年代	白長衫	黑帽笠	除服
世宗28/03/27	白長衫	黑帽笠	卒哭
成宗05/04/16	白長衫	黑帽笠	卒哭

&lt;표 6&gt; 實錄에 나타난 庶人女子의 成服 時 服制

年代	衣	笠	帶	除服	禁制
世宗28/03/27	白衣	笠	帶	13日	凡卒哭前禁用紅紫金玉之飾
睿宗00/09/09	白衣	白笠	白帶	卒哭	
成宗05/04/16	白衣	白笠	白帶	13日	卒哭前凡紅紫金玉之飾一禁
成宗14/04/01	白衣	白笠	白帶	卒哭	
肅宗46/06/08	白衣			練祭	禫前禁用紅紫之飾
英祖00/08/30	白衣			練祭	禫前禁用紅紫之飾
英祖33/02/20	白衣			卒哭	

기록이 없는 경우: 빈칸

나 黑帽笠 역시 黑蓋頭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판단이 옳다 하여도 결국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王室 有服親女와 內·外命婦는 大袖나 蓋頭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兩班婦女들은 白長衫과 黑帽笠이라 표기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또한 卒哭이후 除服한다 하였으니 除服 시기는 文武三品以下 妻와 같고, 成服 時부터 黑帽笠을 쓰는 것으로 보아 복제는 그 보다 한 단계 더 가벼운 것으로 생각된다.

## 6. 庶人女子

서인 여자에 대한 기록은 성종 14년 이전까지는 庶人男女와 僧徒의 복제가 함께 기록되었고, 숙종 46년 이후에는 庶人女子만 따로 기록되었다.

<표 6>에 의하면 서인 여자 복제에 ‘笠’과 ‘帶’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兩班婦女の 복제와 비교해 보면 여자의 것이 아니라 남자와 僧徒를 위한 복제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인 여자의 경우 화려한 자수나 보석장식만 금하였을 뿐 흰색 옷 이외에 다른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除服 시기도 13일, 졸곡, 또는 연제로 다른 계급에 비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 III. 결 론

조선시대 국상 시 오복제도의 계급별 차이점과 시대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일반 오복제도와와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별 차이점은 1. 일부 품목의 차이, 2. 일부 품목의 유무였다. 즉

1. 상의의 경우 왕실 유복친녀, 내명부 내관, 외명부 1품 이하, 양반부녀는 ‘大袖(長衫)’, 내명부 궁관 이하는 ‘背子’ 그리고 서인 여자는 ‘白衣’를 입는 차이를 보였고,

2. 頭飾의 경우 왕실 유복친녀, 내명부 내관 그리고 외명부 1품 이하는 竹釵를 사용하나, 양반부녀, 내명부 궁관 그리고 서인 여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蓋頭의 경우 모든 계급에서 사용하지만 내명부 궁관 內 시비 이하와, 양반부녀 그리고 서인 여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시대에 따른 변화는 큰 변화 없이 지켜져 내려왔으나 1. 일부 품목의 소멸과 2. 불규칙한 사용 그리고 3. 내명부 내관 복제에 변화가 있었다. 즉

1. 소멸된 품목에는 조선 초기에 있었던 扇子, 褰裼, 手衣가 있고,

2. 불규칙하게 사용된 품목에는 蓋頭와 頭髻가 있는데, 蓋頭의 경우 黑·白의 불규칙을 보였고, 頭髻의 경우 사용 여부의 불규칙을 보였다.

3. 세종 28년 이전 기록까지의 내명부 내관 복제는 내관 중에서도 상위계급은 大袖를, 하위계급은 背子를 착용하였으나, 그 후에는 모두 大袖로 통일되었다.

셋째 일반 오복제도와와의 차이점은 1. 유복친의 범위가 넓고, 2. 계급별 복제가 존재하며, 3. 내명부 내관과 궁관의 복제에 기간·직무·장소에 따른 추가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왕실의 권위와 계급의식 그리고 복자와 망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복자가 직

접 모시는 상전과 망자와의 관계까지도 모두 복제에 고려되는 것으로 일반 오복제도와는 다른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오복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상 시 오복제도를 제정한 것은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자 복자의 범위를 온 나라 백성 모두로 넓힌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중에도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궐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계급의 구분뿐만 아니라 기간과 상황 그리고 임무에 따른 추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상 시 오복제도는 유교식 규범과 철저한 신분제도가 정착·유지되기를 바랬던 조선시대 지배층의 의지와, 왕실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된 결과로 생겨난 제도이며, 큰 변화 없이 지켜져 내려온 이유 또한 그러한 의지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經國大典. (1481). 서울大學校 奎章閣 編 (1997). 서울: 서울大學校 奎章閣.
- 國朝續五禮儀. (1744). 法制處 編 (1982). 서울: 法制處.
- 國朝五禮儀. (1474). 法制處 編 (1981). 서울: 法制處.
- 徐兢. (1124). 高麗圖經. 민족문화추진회 編 (197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禮記. (中國 漢代).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編 (1998).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朝鮮王朝實錄. (朝鮮). 國史編纂委員會 編 (1968).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 朱熹. (中國 宋代). 朱子家禮. 임민혁 譯 (2003). 서울: 예문서원.